

1963年鑛工業센서스

調査指示書

통계청 도서실



B0005645

經濟企劃院·韓國產業銀行

316.111
73747

—〈目 次〉—

凡例：目次 및 本文의 項目中 項目末尾에 記載된 數字
는 調查票에 記載된 調查項目의 番號임

第1節 調査員의 任務 1

1. 調査區 1
2. 調査員證 2
3. 調査用品類의 點檢 3
4. 實查要領 3
 - (1) 調査對象事業體의 索出方法 3
 - (2) 面接要領 5
 - (3) 調査票用紙의 交付 6
 - (4) 事業主不在時 或는 臨時休業時 9
 - (5) 調査를 拒絶하는 경우 9
 - (6)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10
 - (7) 不完全調查票의 再實查 11
 - (8) 實查日報 11
 - (9) 其他留意事項 12

第2節 指導員의 任務 14

1. 指導員의 地位 14
2. 調査用品類 14

316.111
73747

3. 實查指導	14
(1) 調査區 境界線의 確認	14
(2) 調査員 實查計劃書에 對한 承認	15
(3) 事業體索出의 督勵	15
(4) 調査不應事業體의 訪問	16
4.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16
5. 連絡 및 報告	17
(1) 連絡場所의 指定 및 確認	17
(2) 連絡時期	17
(3) 報告	18
第3節 調査要綱	19
1. 調査目的	19
2. 調査基準日자 및 調査基準期間	19
3. 調査期間	20
4. 調査機構	20
5. 調査對象	21
(1) 調査對象事業體	21
(2) 調査對象에서 除外되는 事業體	22
(3) 事業體의 定義	23
(4) 鑛業의 定義	25
(5) 製造業의 定義	26

6. 調査項目의 定義와 調査票의 記入方法	26
(1) 一般留意事項	26
(2) 事業體의 特徵(I)	28
i) 事業體의 名稱 및 代表者名(1)	28
ii) 事業體 所在地(2)	29
iii) 主要生產品名 및 生產工程(3)	29
iv) 產業分類番號	31
v) 本社(本店)名(4)	32
vi) 本社(本店) 所在地(5)	32
vii) 組織形態(6)	32
(3) 雇傭 및 紙與額(I)	33
i) 年末現在 從業員數(7)	33
ii) 被雇傭者(7-(1))	34
iii) 生產從業員(7-(1)-①)	35
iv) 事務 및 其他從業員(7-(1)-②)	36
v)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7-(2))	36
vi) 從業員數의 合計(7-(3))	37
vii) 事業體規模符號	37
viii) 月別 被雇傭者數(8)	38
ix) 年間賃金 및 債給支給額(9)	39
x) 現金給與額(9)	39

xi) 現物給與額(9).....	40
xii) 紿與額의 合計(9-(3)).....	40
(4) 年間生産費(人件費 및 間接費 除外)(Ⅲ).....	41
i) 原材料費(10).....	41
ii) 燃料費(11).....	43
iii) 購入電力費(12).....	43
iv) 購入用水費(13).....	44
v) 委託生產費(14).....	44
vi) 修理 및 維持費(15).....	44
(5) 製品出荷額 및 収入額(IV).....	45
i) 製品出荷額(17).....	45
ii) 廉品等出荷額(18).....	47
iii) 受託製造收入額 및 受託修理料收入額 (19, 20).....	47
(6) 内國消費稅額(V-22).....	48
(7) 在庫額(VI).....	48
i) 年初年末 製品在庫額(23).....	48
ii) 年初年末 原材料 및 燃料在庫額(24).....	49
(8) 有形固定資產(VII).....	49
i) 年間有形固定資產의 取得額 및 增改築額(26).....	49

ii) 土 地(26-(1))	50
iii) 建物 및 구조물(26-(2), 26-(3))	50
iv) 機械 및器具(26-(4))	51
v) 車輛, 船舶 및 運搬機器(26-(5))	51
vi) 年間有形固定資産의 處分額 및 損害額(26)	51
(9) 動力施設(■)	52
i) 年末現在 動力施設의 能力(29)	52
ii) 電動機(29-(1))	52
iii) 原動機(船舶用, 車輛用 및 自家發電用 除外)(29-(2))	53
iv) 自家發電能力(29-(4))	53
(10) 管轄事業體(■-30)	53
(11) 其 他	54
(12) 補 遺	54
i) (5)의 i) 製品出荷額	54
ii) (4)의 i) 原材料費	55
iii) 本社實查上의 處理	55

第 1 節 調査員의 任務

1. 調 査 區

우리나라의 全地域을 約 700個의 區域으로 分割하고 이分割된 單位區域을 調査區라고 말합니다.

이 調査區는 調査員 한 사람이 調査期間中에 한 調査區內에 所在하고 있는 全事業體를 容易하게 索出調查 할 수 있도록 交通 및 事業體數等을勘案하여 設定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調査員이 한 調査區를 擔當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各自가 擔當하여야 할 調査區의 區域은 別途配付되는 調査員證에 記載되어 있습니다.

調査員 各自가 擔當하여야 할 區域은 여러분이 活動하여야 할 地理的 範圍가 되므로 區域의 境界線에 關하여 未審한 點이 있으면 所屬指導員으로부터 明確한 指示를 받을 뿐 아니라 自己調查區와 隣接된 調査區 調査員과도相互間의 境界線을 明確히 알아 둠으로서 實查에 있어서 重複調查나 調査漏落을 未然에 防止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實查를 開始하기 前에 自己 擔當 調査區內의 地理的 條件을 充分히 把握하고 最短距離로 全地域을 빠짐없이 踏査할 수 있도록 路順과 日程等을 包含하는 實查

計劃書를 미리 作成하여야 합니다.

實查日程을 計劃함에 있어서는 調査期間 開始日부터 늦어
도 1週日 以內에 擔當全域에 對한 1回의 踏査完了를 目標
로 하여야 합니다.

2. 調査員證

調查員證은 여러분이 事業體로부터 얻은 調査資料의 秘密을 保護하고 統計目的 以外에 使用하지 않겠다는 統計法의 規定하는 條項을 履行하기 為하여 充分히 訓練되고 正當한 調査員임을 調査對象事業體에게 提示하는 唯一의 證明書입니다.

따라서 調査對象事業體의 事業主 또는 代理人 (以下 事業體의 實務者라함)과 面接할 때에는 반드시 調査員證을 提示하여야 하며 비록 以前부터 面識이 있는 相對便이라 할지라도 調査員證의 提示를 省略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調査員證을 提示할 때에는 相對便이 充分히 볼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주는 것과 같은 細心한 注意가 必要합니다.

註: 1) 統計法第 8 條 (統計調查員) ① 指定統計調查를 實施하기 為하여 一線에서 調査하는 統計調查員을 둘 수 있다.

② 本 統計調查員은 本法에서 特히 規定한 것 以外에는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한다.

- 2) 統計法第10條(秘密의 保護) 統計調查의 結果 알려진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의 秘密은 保護되어야 한다.
- 3) 統計法第11條 (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누구든지 指定統計의 作
成을 為하여 蒐集된 統計資料를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여서
는 아니된다.

3. 調查用品類의 點檢

實查上에 必要한 用紙, 用品 및 其他 資料等은 別途配
付될것이니 이려한 用品類을 받으면 다음에 依하여 點檢
하십시오.

- (1) 調査票用紙
- (2) 調査指示書 1 部
- (3) 產業分類 1 部
- (4) 產業別原材料 및 生產品分類 1 部
- (5) 表紙 및 實查日報用紙
- (6) 其他記錄用品(備忘帖, 볼펜, 書類袋, 郵票, 封套, 종
이첩지, 地圖等)

4. 實查要領

(1) 調査對象事業體의 索出方法

調査員은 擔當區域內를 미리 計劃皂 路順을 쓰아서 都市
이면 뒷골목 小路까지 빠짐없이 實地踏査하여 調査要綱에
서 說明하는 調査對象事業體를 索出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

우 調査漏落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 踏査한 곳과 事業體所在地를 날날이 記錄하고 (地圖上에 適宣 表示하는等)自己擔當 區域外에所在하는 事業體를 包含하지 않도록 特別히 注意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索出된 그 場所에 事業體의 單位가 한個인가或은 두個 以上인가를 判斷하여 주시되 그 判斷方法은 事業體의 定義에서 說明되어 있으니 仔細히 읽어 주십시오. 看板이 없어도 調査對象인 事業體가 있을 경우가 있으며 官公署 百貨店 「아파아트엔트」 内等과 같이 外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調査對象事業體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事業體를 發見하면 그近處에 다른 事業體가 있는지 없는지를 索出한 事業體에 問議하는 것도 한 方法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 만을 믿고 全路順의 踏査를 省略하면 특히 都會地에서는 調査漏落이 많이 생길 憂慮가 있으므로 이點 특히 留意하여 주십시오.

萬若 他調查員이 自己擔當區域內의 事業體를 調査한 것 이 判明되었을 때에는 所屬指導區責任者 및 指導員을 通하여 實查한 調査員으로 부터 當該調查票를 받아 重複調查가 되지 않도록 處理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事實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事業體側에 不快

感을 주지 않도록 操心하면서 그 調査員의 姓名, 實查日字, 調査票回收의 與否等을 問議하고 그經緯를 實查日報의 特記事項欄에 詳細히 記載하여 卽日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報告하여야 합니다.

(2) 面接要領

調查員은 調査對象事業體를 索出하면 事業主 또는 代理人과의 面接을 要請하되 面接할 때에는 于先 鄭重한 態度로서 반드시 自己紹介를 먼저 하여 주십시오.

事業體의 實務者가 他人과 面接中인 때에는 그 面談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禮義일 것 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調査員證을 相對便에 提示하여야 하며 비록 以前부터 面識이 있는 相對便이라 할지라도 調査員證의 提示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調查員證을 提示함에 있어서는 相對便이 充分히 볼 수 있는 時間的 餘裕를 주어야 하며 形式的으로 보이는 체만 하여 相對便의 疑心을 사지 않도록 하십시오.

自己紹介의 例를 들면 『이미 新聞이나 포스터 - 를 보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經濟企劃院과 韓國產業銀行이 共同으로 UN과 國內 여러 機關의 協力を 얻어 實施하고 있는 1963年 鎳工業센서스(事業體 實態調査)의

○○地區 擔當 調查員 ○○○입니다. 바쁘신데 罪悚합니다만
暫時동안 時間을 내어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하는 式으로
相對便의 諒解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3) 調査票用紙의 交付

事業體의 實務者에 對한 自己紹介와 諒解를 求하는 人事가 끝나면 調査票用紙를 提示하면서 이번 鑛工業센서스 를 實施하는 目的과 趣旨를 다음과 같은 要領으로 簡單하게 說明하십시오.

이번 調査는 UN產業센서스年을 맞이하여 UN의 勸告下에 全世界的으로 實施한다는 點과 이 調査는 政府의 指定統計로서 統計法의 定하는 바에 따라 對象事業體는 申告義務가 있다는 點과 또한 事業體에서 提供한 資料에 對하여는 統計法에 依하여 秘密이 保護되어 있기 때문에 統計目的以外로는 課稅나 搜查用으로 絶對 使用하지 못한다는 點을 強調한 다음 이 調査의 目的是 우리나라의 國民生活水準을 높이고 產業의 基盤이되는 鑛工業發展을 計劃함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있으며 國家的인 意義가 있다는 것을 說明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說明이 끝나면 封套, 調査票用紙 및 調査要領書를 相對便에 手交하면서 封套는 調査票回收時에 써달

라고付託하십시오. (이는調查票記載內容의秘密을지키기위함임) 그리고事業體의特徵,雇傭또는動力施設의馬力數等과같이比較的容易하게即席에서의記入이可能한것은調查員自身이直接記入토록하여可及的相對便의手苦를덜수있는點에留意하시고그외에即席에서의記入이困難한다른項目은相對便에依賴해도無妨합니다.

그러나이리한境遇에는相對便에對한具體的인記入要領의說明을잊어서는안됩니다.或경우에따라서는調查員이直接問答形式으로調查記入하여야할때도있을것이므로한事業體에對한調查票回收가即席에서可能할경우도있고即席調查가不可能하여調查票回收를爲한再訪問의時日約束이必要할경우도있을것입니다.

따라서調查票를交付하였을때에는반드시그調查票의調查區番號欄에自己調查區番號를,事業體番號欄에調查票의配付順序대로事業體의一連番號를記入하고備忘帖에는事業體番號,事業體名,所在地및調查票回收與否等을記載하여야합니다.

그리고事業體의實務者와面接을할때또是調查票를작成할때에調查員自身이自進해서便利한座席準備를要求하는式의態度를取해서는안됩니다.경우에따라서

는 相對便에게 不愉快한 感을 주지 않기 위하여 선체로 또는 不便한 姿勢로 調査하여야 할 覺悟도 必要할 것 입니다.

특히 調査項目中 秘密을 지켜야 할項目에 關한 質問途中 다른 來客이 왔을 때는 그 調査를 一旦 中止하고 기다리든지 또는 其他方法으로 談話內容이 第三者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注意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如何한 경우라도 相對便과 論爭해서는 絶對로 안됩니다. 相對便이 或 調査員의 質問內容을 잘못 알아듣고 다른 對答을 할 때에도 그것을 直接 否定치 말고 「네」 또는 「그렇습니까」하고 可能한 範圍內에서 肯定을 한 다음 다시 다른 方法으로 理解할 수 있는 質問을 하도록 해 보십시오.

이 調査와 關係없는 政治問題나 一般社會的인 話題를 꺼내지 말것이며 或 相對便이 그런 話題를 꼬집어 내더라도 適當한 方法으로 話題를 돌리든지 하십시오. 調査事務는人事가 끝나는 테로 卽時 시작하여야 하고 時間을虛費해서는 안되며 用務가 끝나면 곧 다음 事業體로 옮겨 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事業體를 떠날 때에는 반드시 相對便에게 「이렇게 잘 協助해 주셔서 感謝합니다.」라는 人事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註: 1) 統計法第3條 (指定統計調查) ①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爲한 調査 (以下指定統計調査라 한다)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 ③ 指定統計調查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經濟企劃院令으로 한다.
- 2) 統計法第5條 (申告義務) ①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機關의 長은 指定統計調查를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에 對하여 統計資料의 申告를 命할 수 있다.
-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의 命令을 받은者が 未成年者나 禁治產者인 境遇 또는 法人 其他의 團體인 境遇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中略) 申告하여야 한다.

(4) 事業主不在時 또는 臨時休業時

事業體를 訪問하였으나 事業主 또는 그의 代理人이 不在中 이거나 또는 公休日關係等으로 臨時 休業中인 때에는 備忘帖에 事業體番號(一連番號), 事業體名, 所在地 및 實查를 못한 事由等을 記錄함으로서 後日의 再訪問에 對備하여야 합니다.

(5) 調査를 拒絕하는 경우

相對便이 非協調的이거나 拒絕하는 態度를 보일 때에도 調査員은 沈着한 態度로 相對便의 理解를 求하도록 努力하여야 합니다.

調查項目이 많아서 귀찮아 할 때에는 外國의 例에 比하여 顯著히 簡單하다는 것과 調査目的의 重要性等을 強調하십시오.

이 調査에서 얻어진 資料가 여러가지 政策樹立에 利用됨으로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을 가져오게 할뿐 아니라 間

接的으로 同事業體의 繁盛을 바랄 수 있다는 點을 說明
하십시오.

또한 이 션서스의 結果로 發行될 事業體名簿에는 各事業體에 對한 事業體名, 代表者名, 所在地, 電話番號, 主要生產品名, 從業員數等이 記載됨에 따라 各事業體의 無料廣告가 되는 利點이 있다는 것을 說明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이 說得시켜도 調查를 拒絕할 경우에는 相對便에 不快한 感을 주거나 다시는 訪問치 않겠다는 意味의 最後의인 말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態度를 보여서는 絶對로 안되며 後日에 2回 3回 再訪問한다면 그 誠意에 感動하여 大體로 協力を 求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도 始終 拒絕할 때에는 所屬指導區責任者와 指導員에게 그 經緯와 事由를 報告하고 指示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强硬히 拒絕하는 事業體가 있다 하더라도 有能한 調査員 여러분은 热과 努力만 있다면 能히 說得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6)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調査員이 直接 踏査하면서 配付한 調査票는 늦어도 調査期間 最終日까지 그 全部를 回收하되 個個 調査票에 誤記漏落等이 없는 가를 慎重히 檢討한 後 不完全한 點을 發

見하면 即時 再調査하여야 합니다. 完全한 것으로 確認된 調査票는 事業體(一連番號) 順序대로 모아 表紙와 같이 練하고 그 表紙에는 調査區番號, 調査票枚數, 調査員姓名等 을 記入하여야 합니다. 이 調査票綴은 調査期間 完了翌日부터 2日以內에 指導員을 經由하여 所屬指導區責任者에게 提出하여야 합니다. 提出方法은 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直接 手渡하여야 하며 特別한 指示가 有する限人便이나 郵便으로 送付하여서는 안됩니다.

(7) 不完全調査票의 再實查

調査員이 提出한 調査票에 對하여는 指導區責任者 또는 本部에서 審査한 다음 不完全한 點이 發見되면 再調査를 指示할 것입니다. 이전 調査票는 最短時日內에 再調査하여 指定한 日字까지 指定한 場所로 送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各調查員은 이와 같은 2次 3次의 手苦를 덜기 위하여 처음부터 錯誤가 없도록 格別 留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實查日報

事業體의 索出, 調査票用紙의 交付 및 調査票의 回收等 調査員의 活動狀況을 實查日報(所定樣式)에 依하여 每日 所

屬指導區責任者와 指導員에게 報告(郵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索出한 事業體와 同一한 企業體에 屬하고 別個의 事業體로 看做되는 本社, 支社, 出張所 및 分工場等이 他調查區域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名稱, 所在地, 代表者名, 主要生產品名, 從業員數 및 稼動與否等을 調查하여 實查日報에 記載하여 주십시오.

(9) 其他留意事項

- i) 調查中途에 未審한 點이 생기면 調查指示書 또는 其他配付資料를 보고 解決하거나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問議해서 解決하도록, 하고 調查員任意로 處理해서는 안됩니다.
- ii) 如何한 경우라도 他人에게 調査를 依頼하거나 調査票의 記入을 全的으로 事業體側에만 依頼하여서는 안됩니다.
- iii) 비록 事業體에서 虛偽資料를 提供할지라도 獨斷的인 判斷으로 記入하지 말고 恒常 前後 記載內容을 相互對照하거나 또는 事業體에게 再問議하여 正確한 調査가 되도록 努力하여야 합니다.
- iv) 調査票記入이 一旦 完了되면 그대로 調査票를 回收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再檢討하여 疑問이 나는 點이 있거나 相互矛盾된 點이 있으면 再調查하여야 합니다.

- v) 調查票의 記載事項을 他用紙에 轉寫하거나 外部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記入된 調查票는 調査員이 調査가 끝날 때 까지 保管하여야 하므로 保管에 格別한 .操心이 必要합니다.
- vi) 調査票用紙 節約에 留意하되 萬一 調査途中 用紙不足이 豫見되면 곧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遲滯없이 連絡하여 주십시오.
- vii) 事業體의 秘密漏泄을 防止하는 見地에서 汚損된 調査票는 반드시 回收하여 所屬指導區責任者 또는 指導員에게 返納하여야 합니다.
- viii) 不誠實한 調査로 調査票의 該當欄을 空白으로 두거나 調査票에 虛偽로 操作한 數字를 記入해서는 안되며 索出된 事業體를 故意的으로 調査漏落시켜서는 안됩니다.

第2節 指導員의 任務

1. 指導員의 地位

指導員은 指導區責任者의 指示를 받아 現地에서 調查員의 活動을 直接 指導 또는 支援하는 한편 例常 調査員의 活動狀況을 把握하고 이를 指導區責任者에 報告함으로서 指導區責任者와 調査員間의 有機的인 連絡關係를 維持 強化하여야 할 地位에 있는 것 입니다.

指導員 여러분이 擔當하여야 할 調査區番號는 別途 配付해 드릴 調査要員證에 記載되어 있습니다.

2. 調査用 品類

指導員自身이 必要한 各種用紙, 用品 및 資料等의 配付를 받으면 第1節 3에 準하여 이를 點檢하여 주십시오.

調查員에 追加供給하여야 할 各種用紙의 一括配付를 받아 保管하였다가 調査員으로부터 追加請求가 있는 대로 配付하여 주십시오.

3. 實查指導

(I) 調査區境界線의 確認

指導區責任者가 特히 指摘하거나 또는 調査員으로부터 未

審하다고 申告되는 境界線에 對하여는 關聯 調查員과 同途로 現地를 踏査하고 具體的이고 明白한 境界線을 關聯調查員에게 確認시켜야 합니다.

(2) 調查員實查計劃書에 對한 承認

指導員은 擔當調查區域內의 地理的條件을 調查把握하여야 하며 調查期間 開始前日까지 所屬調查員으로 부터 實查計劃書(日程과 路廻)의 提出을 받아 그의 合理性與否를 調查員과 討議한 다음 이를 承認하고 同計劃書의 各1部式을 所屬指導區責任者에게 提出하여야 합니다.

(3) 事業體索出의 督勵

指導員에게는 本部에서 既存資料에 依하여 作成한 事業體카아드를 配付할것이니 이 카아드를 索出督勵에 活用하여야 하며 調査完了後에는 이를 指導區責任者에게 返還하여야 합니다.

이 카아드에는 索出하여야 할 全事業體를 記錄한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카아드에 記載된 內容 即 不充分한 情報를 事前에 調査員에게 提供함으로써 調査漏落을 가지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原則上 事業體카아드를 調査員에 보여 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一部區域에 對한 調査員의 索出報告(實查日報)를 받았을 때에는 同報告內容을 事業體카아드

와 對照하고 漏落事業體를 發見하면 그 内容을 調查員에게 通知하여 追加索出토록 指示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地域이 廣大하거나 또는 都市以外인 農村地區 調查區에 있어서 調查員이 事業體 分布에 對한 情報를 事前에 把握함으로서 索出能率을 높일 수 있고 ·索出漏落의 憂慮가 없다고 指導區責任者가 認定할 때에는 카아드의 情報를 調査員에게 事前提供할 수 있습니다.

(4) 調査不應事業體의 訪問

指導員이 調査不應事業體를 訪問코자 할 때에는 指導區責任者로부터 協調依賴文(經濟企劃院長官 產銀總裁 共同名義)의 交付를 받아 持參하고 可及 調査員과 同途 訪問하여야 하며 同事業體側과의 面談은 于先 不應의 意思를 表明하였던 者부터 시작하고 萬一 그사람이 如前히 不應할 때에는 順次的으로 높은 地位에 있는 者와 面談하고 最終的으로 同事業體 代表者の 意思를 確認하여야 합니다.

4. 調査票의 回收 및 提出

調査員으로 부터 檢討完了된 調査票의 提出을 받으면 이를 表紙, 實查日報, 事業體카아드等의 内容과 對照하고 調査票枚數의 符合與否, 漏落事業體의 有無, 重複調查의 有無, 内容錯誤의 有無等을 檢討確認한 다음 不備點의 補充

이나、追加調査를 指示하여야 합니다.

回收된 各調查員의 調查票綴, 未使用用紙, 汚損調查票 및
事業體카아드 等은 調査期間 完了後 2日以內에 指導區責
任者에게 이를 直接 手渡하여야 합니다.

5· 連絡 및 報告

(1) 連絡場所의 指定 및 確認

指導員은 自己와 連絡하는데 있어서 가장 便利한 場所
로 自己住所나 住所附近에 이를 指定하고 所屬指導區責任
者와 調査員에 미리 周知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所屬調查員과 指導區責任者の 連絡場所를 確認記
錄함으로서 後日의 連絡에 對備해 주십시오.

(2) 連絡時期

指導員은 調査期間中 調査進行狀況을 連絡하고 새로운 對
策을 檢討하기 為해서 所屬調查員 또는 指導區責任者와 直
接面接하여야 하며 그 回數는 交通事情과 區域의 廣狹等
을勘案함과 아울러 다음의 範圍內에서 指導區責任者와 相
議해서 定하여야 한다.

- i) 調査員과는 2~3日間에 1回以上
- ii) 指導區責任者와는 5~10回 (責任者の 巡視를 包含)

(3) 報 告

所屬指導區責任者와 本部에 對하여 每 2 日에 實查指導隔日報(所定樣式)를 定期的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必要에 따라서는 隨時로 文書로 報告하여야 합니다.

調查員과 面接할때에는 進行狀況을 口頭報告 받는 外에 調查員이 備置하고 있는 實查日報(備本)에 依하여 進行狀況을 檢討하고 새로운 指示나 意見을 傳達하여야 합니다.

第3節 調査要綱

1. 調査目的

이 셈서스의 目的은 우리나라 鐵工業部門의 實態를 計數的으로 正確히 把握함으로서 鐵工業의 發展을 비롯한 諸般 經濟政策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有입니다.

이리하여 이 調査事業은 어떤 機關이나 政府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舉國的으로 推進하여야 할 重要한 意義를 지니고 有입니다.

2. 調査基準日字 및 調査基準期間

調査基準日字는 1963年12月31日로 하며 調査基準期間은 1963年1月1日부터 1963年12月31일 까지의 1個年間으로 합니다.

調査基準日字는 어느 調査項目의 狀態를 一定한 時點에서 調査코자 할 경우에 必要한 基準되는 日字를 말하며例컨데 이번 셈서스에서 從業員數, 動力施設等은 一定한 時點 即 調査基準日字인 1963年12月31日 現在의 狀態를 調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調査基準期間은 一定期間의 狀態를 調査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調査項目의 調査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
期間을 말하며 例컨대 이번 센서스에서 生產費, 出荷額,
有形固定資產取得額等은 調査基準期間인 1963年間의 總累計
額을 調査하는 것 입니다.

3. 調査期間

調査期間은 1964年3月23日부터 1964年4月11日까지의 20日
間입니다.

調査期間은 實地로 調査하는 期間으로서 對象事業體를 實
地로 訪問하고 事業體에게 申告義務의 履行을 要求할 수
있는 期間입니다.

4. 調査機構

韓國產業銀行 本店內에 經濟企劃院과 產銀의 共同機構인
礦工業센서스本部를 設置하고 全國에 33個의 指導區와 691
個의 調査區를 設定하며 指導區에는 指導區責任者 1名과 若
干名의 指導員을 配置하고 調査區에는 1名의 調査員을 配
置합니다.

指導區責任者は 本部의 指示를 받아 管轄指導區內의 指
導員과 調査員을 指揮監督케 하고 指導員은 指導區責任者

의 指示를 받아 調査員의 活動을 指導 또는 支援케 함과
아울러 指導區責任者와 調査員間의 連絡業務를 擔當케 하고
調查員은 擔當調查區域內를 實地踏查하여 調査業務를 擔當
케 합니다.

5. 調査對象

(1) 調査對象事業體

이 調査는 1963年12月末日(調査基準日字)現在 國內에 實在하고 別冊 產業分類에서 말하는 鐵業 및 製造業에 屬하는 事業體로서

- i) 1963年12月末日現在 從業員數 5名以上이거나
- ii) 1963年12月中 操業日數의 平均從業員數 5名以上이거나
- iii) 1963年1月1일부터 1963年12月末日까지인 調査基準期間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 5名以上的 從業員을 가지고 있으면 調査對象事業體로 합니다.

그러나 休業中이거나 季節的인 事業體는 1963年間의 操業月數가 3個月以上이고 그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5名以上이면 1963年12月末日現在 操業中 이거나 休業中 이거나를 不問하고 모두 調査對象이 됩니다.

그리고 製鹽事業體는 1963年間의 操業月數가 3個月未滿 이더라도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5人以上이면 調査對象으로 합니다.

(2) 調査對象에서 除外되는 事業體

- i) 1963年12月末日現在 從業員數가 4名以下 또는 同年12月中 操業日數의 平均從業員數가 4名以下이거나 或은 1963年間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4名以下인 事業體
- ii) 休業中 또는 季節的인 事業體로서 1963年12月末日現在 休業中일 때에는 1963年間의 操業月數가 3個月未滿이거나 그 操業月數의 平均從業員數가 4名以下인 事業體
- iii) 1963年12月末日現在에 設立中에 있거나 또는 新設工事中인 事業體
- iv) 政府의 會計에 依하여 運營되는 事業體로서 鐵道廳의 車輛工作廠 및 專賣廳의 煙草工場을 除外한 事業體
- v) 國軍, 國聯軍 및 外國의 外交機關이 直營하는 事業體
- vi) 公共職業補導所의 作業所

vii) 公共團體 및 學校에 屬해 있는 試驗所, 研究所等은
原則的으로 調查對象에서 除外됩니다.

(3) 事業體의 定義

事業體라 함은 個個의 工場, 作業場, 鐵山事務所(店舗)等
과 같이 그곳에서 製品, 鐵產物 또는 「써어비스」(修理및
加工)를 生產하는 獨立한 「物理的 場所」로서 하나의 單一
產業으로 分類할 수 있는 產業的 單位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會社 또는 한工場에 所屬된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떨어져있는 支社 或은 分工場 또는 出張所等을 各
各 別個의 事業體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個의 事業體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음
니다.

i) 同一構內에 있더라도 別個의 事業體로 보아야 하는 경우

單一經營體에 屬하는 몇個의 事業이 同一한 構內에
있는 경우 (例, 한 株式會社가 同一한 構內에 고무
신工場, 타이어工場, 벨트工場 等을 가지고 있을때)에 出
勤簿와 貨金支拂臺帳 및 財產目錄이 各工場別로 區分
되어 있으면 각각 別個의 事業體로 봅니다. 萬一 財
產目錄이 欲을 경우에 原料購入額, 製品生產額, 製品販

賣額等을 工場別로 區分 調査할 수 만 있다면 財產
目錄이 있는 것으로 看做합니다.

ii)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事業體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서 別個의 構內에 있더라도 前記(i)에서
말한 記錄이 統合되어 있을 때에는 그 記錄을 主管
하고 있는 事業體에 包含시켜 하나의 事業體로 봅니
다.

이때에 그 記錄을 主管하고 있는 事業體가 他調查
區內에 所在하고 있을 경우에는 自己調查區內에서 可
能한데까지 調査하여 이를 調査票에 記入하고 同調查
票를 實查日報에 添付하여 所屬指導區責任者에게 即日
送付하여 주십시오.

指導區責任者를 經由하여 이 未完成調查票를 받은
調査員은 殘餘調查를 履行하여 주십시오.

iii) 本社, 支社, 支店, 販賣部等의 處理
作業現場과 떠나져 있는 場所에 있는 本社, 支社,
支店, 販賣部等에 對한 事業體處理는 前記(i)에서 말
하는 記錄을 각各 獨立하여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別個事業體로 각各 處理하여야 하며 萬一 (i)에서 말
하는 記錄이 統合되어 있을 때에는 前記(ii)에서 말
한 바와 같은 方法에 準하여 處理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事業體가 主로 他企業體 生產品의 賣買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事業體를 調查對象에서 除外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別個事業體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主로自己企業體 生產品의 賣買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事業體를 調查對象으로 합니다.

(4) 鐵業의 定義

天然的으로 固體, 液體 또는 氣體로 되어있는 鐵物을 採掘, 採取하는 事業을 말합니다. 鐵物의 採掘은 地下坑道에서 하거나 地表坑場에서 하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鐵石中의 混雜物을 除去하기 為한 附隨的作業 即 鐵石의 破碎, 洗滌, 乾燥, 選鐵等도 鐵山經營者가 하거나 鐵山을 直營하지 않은 事業體가 請負에 依하여 하거나를 가리지 않고 모두 鐵業에 包含합니다.

그리고 鐵物試掘業, 鐵物性燃料와 金屬鐵物의 採掘, 採取業以外에 鹽 및 土砂石等의 非金屬鐵物 및 稀有金屬鐵業等도 이에 包含합니다.

鐵業의 보다더 細密한 定義와 그 分類方法은 別冊 產業分類에 依하여 決定해 주십시오.

(5) 製造業의 定義

製造業은 無機的物質 또는 有機的物質(原材料)에 物理的作用 또는 化學的作用을 加함으로서 그것(原材料)을 新로운 生產品으로 轉換시키는 產業活動을 말합니다.

그 作業은 動力으로 하거나 人力으로 하거나 또는 工場에서 하거나 家內에서 하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i) 製造된 部分品을 組成(組立)하는 活動은 建物, 道路, 港灣等의 建設 또는 施設工事を 主目的으로 하는 建設業이 아닌限 이를 製造業으로 봅니다.

ii) 修理業은 一般的으로 製造業으로 보고 修理되는 物品을 製造하는 業種에 包含시켜서 分類합니다.

iii) 發電室, 研究室, 修理工場, 車庫, 倉庫等과 같이 製造業을 營爲하는 事業體에 附隨되어 補助的인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事業의 主된 業種에 包含시켜 分類합니다.

製造業의 보다 細密한 定義와 그 分類方法은 別冊 產業分類에 依하여 決定해 주십시오.

6. 調查項目의 定義와 調査票의 記入方法

(1) 一般留意事項

調查票는 實查完了後 審查, 分類, 集計等 여러作業에 繼續 使用될 것이며 永久保存할 것이므로 調查票의 記入에 있어서는 格別한 注意가 必要하며 다음 事項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i) 調査票에는 반드시 青色 또는 黑色잉크를 使用하여 깨끗하게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數字以外는 可及 漢字의 正字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iii) 數字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야」數字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라비아 數字를 훌려서 쓰면 분간하기 어려울 때 가 있으니 특히 4와 6, 0과 6, 3과 5, 7과 9를 混同되지 않도록 차근 차근 하게 記入하여 주십시오.

iv) 各 金額欄은 金額單位를 正確하게 區分하기 위하여 千원, 萬원, 十萬원, 千萬원, 億원.....과 같이 單位金額을 記入할 數字 하나 하나의 자리를 調査票에 미리 定해 놓았으니 金額의 數字를 正確한 자리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v) 千원未滿의 金額은 4捨5入하시고 4捨5入 해도 千원에 未達되는 金額은 「0」으로 表示하여 주십시오.

vi) 訂正코자 할 때는 誤記된 곳에 두줄의 赤線을 그

고 그 바로 위에 正當한 것을 깨끗이 記入하여 주십시오.

vii) 調査票의 各欄에 「☆」標가 있는 곳은 記入하지 마시고 ※標가 있는 곳은 調査員만이 記入할 수 있는 곳이니 事業體側에서는 記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2) 事業體의 特徵 (I)

i) 事業體의 名稱 및 代表者名 (1)

事業體의 名稱이라 함은 그 事業體가 營業上 現實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商號를 말하며 그 事業體의 特徵을 具體的으로 밝힐 수 있는 名稱을 調査票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例를 들면 「韓國○○工業株式會社 ○○工場 또는 ○○企業社 ○○工場」等으로 詳細히 記入하여야 합니다.

代表者라 함은 그 事業體를 對外的으로 代表하는 事業主 또는 法人の 代表者를 말합니다. 代表者인 自然人の 姓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事業體 所在地 (2)

事業을 經營하고 있는 實地場所를 말하여 市, 道名 부터
番地數까지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所在地欄에는 行政區域의 單位名稱이 미리 印刷되어 있
으니 行政區域名을 該當한 곳에 插入하는 同時에 各該
當單位名稱을 「○」으로 둘러 싸 주십시오.

iii) 主要生產品名 및 生產工程 (3)

主要生產品名 및 그 生產工程은 그 事業體의 業種을 分
類決定하는 为 必要한 基準이 되는 것이며 또한 別冊 產
業分類에서도 主要生產品名과 그 生產工程을 基準으로 하
여 業種을 分類하고 있습니다. 한 事業體가 1種類의 製
品만을 生產할 때에는 그의 品名과 工程을 記入하면 되
며 2種類 또는 그 以上일 境遇에는 다음의 方法으로
主要生產品 하나 또는 둘을 選定하고 그 品名과 그 生產工
程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 (ㄱ) 1963年間의 賣上高 또는 收入이 제일 많은 生產
、品 또는 써어비스
- (ㄴ) 萬一 (ㄱ)項의 方法으로 選定하기 困難한 경우에

는 從業員數 또는 設備의 程度(價格)가 제일 많은
生產品 또는 サービス

(ㄷ) 生產品이 季節的으로 變動할 때에는 最近의 實績
에 關係有이 1963年間의 賣上高 또는 收入이 제일
많은 生產品 또는 サービス

(ㅌ) 한 事業體가 伐木과 製材를, 또는 粘土探掘과 벽
돌製造를 一貫作業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最終生產
品인 木材 또는 벽돌을 主要生產品으로 選定합니
다.

그러나 大部分의 原木을 原木대로 販賣하고 極少量
만을 製材하는 경우에는 그 主된 事業은 結局 原
木의 伐木業(林業)이 되므로 調査對象에서 除外됩니
다.

(鑛業의 경우)

例컨대 無煙炭의 採掘부터 選鑛까지 一貫作業을 하
고 있을 때에는 主要生產品名을 「無煙炭」이라 먼저
記入하고 (採掘→選鑛→無煙炭)과 같이 生產工程을 記
入하여 주십시오.

(製造業의 경우)

例컨데 于先 한 事業體가 主로 「벽돌」製造를 하고

있을 경우 主要生産品名에는 「벽돌」이라고 먼저 記入하고 다음에 生産工程에는 (粘土→成形→燒成) 程度로 簡單히 要約해서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原棉을 原料로 使用하여 綿糸를 製造할 경우 먼저 主要生産品名에 「綿糸」라고 記入하고 生産工程에는 (原棉→精紡→綿糸)라고 記入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主要生産品名이 「外衣 및 外套」일 경우에는 (購入外套服地→裁斷→裁縫→男子用外套)와 같이 生産工程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한 事業體의 生産工程에 있어서 投入原料가 素材이냐 中間製品이냐를 가려 내고 또한 最終工程에서 나오는 製品이 中間製品이냐 最終完製品이냐를 가려내는데 이 項目을 調査하는 根本目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主要生産品名과 그 生産工程은 다음에서 나오는 產業分類의 正確性을 期하는데 있어서도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입니다.

iv) 產業分類番號

上記와 같은 要領에 依하여 主要生産品名과 그 生産工程이 確定되면 그 品名과 工程에 依하여 別冊 產業分類에서 그 事業體의 產業分類番號 (細分類-4자리數字)를 찾아

내서 調査票의 產業分類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v) 本社(本店)名 (4)

本社(本店)라 함은 1個 또는 1個以上의 事業體를 總轄하는 한 企業體의 中樞의이며 主된 唯一의 單位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欄에는 本社 또는 本店이 營業上 現實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商號를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本社 또는 本店名이 別途로 없을 경우에는 「事業體名과 同一」이라 記入하여 주십시오.

vi) 本社(本店)所在地 (5)

本社(本店)가 있는 所在地를 말하여 市道名부터 番地數까지 具體的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所在地의 記入要領은 事業體所在地의 記入方法에 準하여 處理하여 주십시오.

vii) 組織形態 (6)

이 項目에서는 그 事業體가 所屬되어 있는 經營主體(企業體)가 法人인가 個人인가를 먼저 実明하고 法人인 경우에는 株式會社인가 其他法人인가를 區分한 다음 調査票 事業體의 特徵 組織形態欄의 括弧內에 「○」表示를 하는同

時 別欄의 組織形態에 다음의 符號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株式會社……1, 其他法人……2, 個人……3

法人이라 함은 商法, 民法, 또는 特殊法에 依하여 設立 되고 法人登記를 完了하여 法人格을 갖이고 있는 法人을 말하며 法人에는 商法에 依한 株式會社,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會社와 民法에 依한 財團法人, 社團法人과 特殊法에 依한 特殊法人(例컨데 國營企業體)等이 있으나 여기서는 株式會社와 其他法人으로 區分하고 其他法人에는 株式會社以外의 모든 法人을 包含하여 주십시오.

個人 即 個人事業體라 함은 單一世帶 또는 單一所有의 事業體와 法人格이 없는 組合과 같은 任意團體 및 2人以上에 의하여 共同目的을 爲하여 構成되어 있는 事業體를 말합니다. 그리고 家族만이 作業을 하고 있는 個人事業에 있어서는 事業費와 家計費의 區分만 되어 있으면 하나의 事業體로 보아 주십시오.

(3) 雇傭 및 紙與額 (II)

i) 年末現在 從業員數 (7)

從業員이라 함은 그 事業體內部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外部에서 일을 하거나를 不問하고 그 事業體의 運營에 直接 從事하는 者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從業員에는

그 事業體의 直接的인 生產活動에 從事하거나 或은 間接的 또는 補助的인 生產活動에 從事하거나를 莫論하고 모두 從業員이라 할 수 있으며 生產活動과 直接的인 關聯이 없는 販賣 및 配達員等까지도 從業員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經營業務에 直接 從事하고 있는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은 이를 從業員數에 包含시키는 것이 當然하나 經營業務에 直接 從事하지 않는 共同經營者 또는 株主까지도 包含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有給重役이나 支配人은 被雇傭者로 看做되는 것입니다. 原則的으로 從業員數의 計算은 1963年12月31日現在로 하여야 할 것이나 同年末現在의 計算이 困難할 경우에는 1963年中 年末에 가장 가까운 그 事業體의 紿與計算基準日現在의 從業員數를 記入하여도 無妨합니다.

ii) 被雇傭者 (7-(1))

一定한 算出基準에 依하여 賃金, 債給 또는 이에 準하는 形式의 紿與를 받고 있는 모든 從業員을 말합니다. 卽 生產從業員 (常傭, 臨時, 日傭 및 有給家族從業員不問)과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合計人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事業體內의 現場에서 일을 하지 않고

自己住宅에서 일을 하는 從業員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例를 外衣 및 外套製造事業體의 단추달기 作業 또는 紙
袋 및 封套製造工場의 풀바르기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自宅生產從業員數도 被雇傭者數에 包含시키는
것은 當然하나 委託製造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受託製造를
맡은 事業體의 從業員數를 包含시켜서는 絶對로 안됩니다.

그리고 債給이나 賃金 또는 外務手當을 받고 있는 外
務員도 被雇傭者에 包含하나 不定期的으로 偶然한 機會
에 成立한 써어비스에 對하여 콤밋손을 받는 부로오카等은
被雇傭者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無期限缺勤者, 軍務에 服役中인 者는 여기서 除
外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病暇者, 事故로 困한 短期休暇者 및 龕業中인
者는 被雇傭者에 包含합니다.

iii) 生產從業員(7-(1)-①)

製品 및 鑛產物의 生產에 直接 關聯있는 一線現場作業에
主로 從事하는 現場從業員 또는 이와 같은 生產의 補助
作業에 從事하는 從業員과 自宅生產從業員等을 말합니다.

그러나 現場에서 從事하더라도 實地로 肉體的 作業을 하

지 않고 後線에서 從事하는 事務員, 支配人, 重役等은 여
기에 包含하지 않고 事務 및 其他從業員에 包含하여 주십
시오.

具體的으로 說明하면 製造業인 경우에 있어서는 造製,
加工, 檢查, 檢量, 入荷, 貯藏, 操作, 包裝, 入庫, 出荷, 補修,
守衛, 補助의 生產品의 生產業務, 生產工程의 記錄事務,
其他 上記業務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生產從業員이며 鎳業인 경우에 있어서는 採鎳, 剖進,
坑內支柱, 捲揚, 換氣, 排水, 穿孔, 發破, 粉碎, 選鎳, 檢查,
貯藏, 出荷, 保全, 修理, 守衛, 自家用品의 生產部門, 生產過程의
記錄事務, 其他 上記業務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業務에 從事하는 從業員을 말합니다.

iv) 事務 및 其他從業員(7-(1)-②)

生產從業員 以外의 從業員을 말합니다. 即 經理, 打字, 人事, 福利, 厚生, 企劃, 販賣, 配達, 試驗 및 研究部門에 從事하고 實地로 作業을 하지 않는 從業員을 말하며 여기에는 報酬를 받는 支配人, 重役等도 包含됩니다.

v)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7-(2))

事業體의 主人(出資者包含)과 主人の 家族(同居者包含)

이 事業體運營을 위하여 事務나 또는 勞務에 1週 16時間

以上 從事하되 一定한 算定基準에 依하여 賃金이나 債給 또는 이에 準하는 紙與를 받지 않는 者를 말합니다.

그러나 名義上만 事業主이고 1週 16時間以上(正常勞動時間의 3分之1 以上) 就業치 않는 者는 여기에서 除外하여야 합니다.

以上의 條件을 가지고 있는 2人以上의 同業主가 있을 경우에는 그中에서 1名만을 事業主로 보고 나머지는 無給家族從業員으로 보아야 합니다.

vi) 從業員數의 合計(7-(3))

被雇傭者數와 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數를 合한 總人員數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被雇傭者數는 生產從業員數와 事務 및 其他從業員數를 合한 것입니다.

vii) 事業體 規模符號

事業體規模라 함은 그 事業體從業員數合計(事業主 및 無給家族從業員 + 被雇傭者數)에 依한 階層의 位置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普通 從業員數에 依한 規模를 事業體規模 또는 企業體規模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各事業體規模를 다음 表에서 指定한 該當規模符號를 찾아서 그符號를 調查票 別欄의 規模別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符號의 記入은 調査員이 直接 하여 주십시오.)

事 業 體 規 模 符 號

從業員數階層	規 模 符 號	
	鑄 業	製 造 業
5~ 9人	1 1	1 1
10~ 19人	1 2	1 2
20~ 29人	1 3	1 3
30~ 49人	1 4	2 4
50~ 99人	2 5	2 5
100~199人	3 6	3 6
200~499人	4 7	4 7
500人以上	4 8	4 8

viii) 月別 被雇傭者數 (8)

1963年間의 生產從業員과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每月末
被雇傭者數(年末現在從業員數의 說明参照)를 記入하여 주십시오.

1963年間에 休業한 月에는 被雇傭者數 앞에 「△」 表示
를 하여 주십시오.

年間操業月數欄에는 「△」 表示가 없는 月數量, 操業月合計

人員數欄에는 △表示가 없는 月의 人員數를 合算한 것을,
操業月平均人員數欄에는 操業月合計人員數를 年間操業月數로
나눈 人員數(4捨5入)를 각각 記入하여 주십시오.

ix) 年間賃金 및 債給支給額 (9)

1963年中 事業體에서 一定한 算定基準에 依하여 被雇傭者
에게 支給한 모든 紙與額을 말합니다.

給與라 함은 現金 또는 現物(物品)을 不問하고 定期 또는
不定期를 不問하고 勞務의 代價로 被雇傭者에게 支給되는
俸給, 賃金, 賞與金, 各種手當, 生計補助金等을 말하며 여기
서는 退職慰勞金을 除外합니다.

그러나 無期限缺勤者, 軍務에 服務하는 者에 對한 諸給
與額과 1963年 以前에 있어서 滯拂되었던 것을 1963年中
에 支給한 紙與額은 여기에 包含시켜서는 안됩니다. 反面
에 自宅生產從業員에 對한 紙與額은 여기에 包含하여야하며
1963年中에 支給하여야 할 것으로서 滯拂된 紙與額은 支
給額으로 보아(加算) 주십시오.

x) 現金給與額 (9)

現金給與額이라 함은 稅金, 貯金, 勞動組合費, 賣店의 物
品代 等을 控除하고 支給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이 被雇

傭者가 負擔하여야 할 金額을 控除하기 以前의 金額 即 事業體에서 負擔한 全額을 말합니다.

萬一에 被雇傭者가 負擔하여야 할 紙與所得稅를 紙與額에 서 控除하지 않고 이를 事業體에서 直接負擔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은 事業體負擔은 現金給與額에 이를 加算하여 주십시오.

xi) 現物給與額 (9)

現物給與라 함은 紙與로써 現金이 아닌 現物(物品)을 被雇傭者에게 支給한 것을 말합니다.

支給한 現物이 自家生產品인 경우에는 支給한 日字 現在의 工場引渡販賣價格으로 評價하고 購入品인 경우에는 實地 購入한 價格으로 評價換算하고 金額으로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一部有償인 때에는 前項에 依하여 換算된 金額에서 被雇傭者가 負擔한 金額을 控除한 殘額 即 事業體에서 事實上 負擔한 金額만을 여기에 加算하여 주십시오.

xii) 紙與額의 合計(9-(3))

生產從業員의 것과 事務 및 其他從業員의 것을 合算하여 橫列合計欄에, 現金給與額과 現物給與額을 合算하여 縱列合計欄에 각각 記入하며 總合計는 橫列合計에 依한것과 縱列

合計에 依한것이 各各 符合하여야 합니다.

(4) 年間生產費(人件費 및 間接生產費除外)(Ⅲ)

1963年間의 生產을 爲하여 使用(消費)한 諸費用中에서 人件費와 間接生產費를 除外한 原材料費, 燃料費, 購入電力費, 購入用水費, 委託生產費와 修理 및 維持費를 調査하여 各各 該當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한가지 注意하여야 할 것은 原材料費나 燃料費等의 計算에 있어서 1963年間에 購入한 것과 使用한 것을 混同하기 쉬운데 購入과 使用은 嚴然히 區分하여야 할 性質의 것이며 여기서 要求하고 있는 것은 1963年間에 使用한 原材料의 價格, 使用한 燃料의 價格입니다. 例컨데 그 年間에 1年6個月에 걸쳐 使用할 原材料를 購入하였다고 假定하면 1年分을 使用하고 6個月分은 在庫로 남았을 것 이므로 이런때에 原材料費로 1年分에 對한 價格만을 計上하여야 하며 1年6個月분을 計上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i) 原 材 料 費(10)

여기서 原材料라 함은 自家生産하였거나 購入한 原材料를 使用하여 鑄產物, 製品 및 「써어비스」를 自己探算下에 生産하는もの 있어서 1963年間에 使用(消費)한 素材를 말하며

化學藥品, 包裝材料等과 같은 補助材料도 原材料에 包含합니다.

그리고 他事業體에게 自己原材料를 供給하고 委託製造를 시킨 경우에는 受託製造事業體에서 1963年間의 生產에 使用(消費)한 原材料費도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다른 事業體로부터 原材料의 供給을 받아 受託生產을 한 경우에 受託生產에 使用한 原材料를 그 事業體의 生產費로 計上해서는 안됩니다.

無煙炭과 같이 普通 燃料로 使用되는 것이 라도 煉炭工場의 경우는 原材料로 使用한다는 것을 留意하여 주십시오.

同一事業體內에서 原材料를 使用하여 中間製品을 製造하고 그 中間製品을 다시 使用하여 最終完製품을 生產한 경우에는 最初의 原材料에 對한 使用額만을 計上하여 주십시오.

調査票 原材料費欄에는 그 事業體에서 1963年中에 使用한 原材料의 主要品目을 別冊 原材料分類에 記載된 그 事業體의 產業細分類에 該當되는 原材料品目中에서 使用金額이 큰것 부터 [8種까지]를 選定한 다음 그 選定된 品目에 依한 品名, 單位, 數量, 金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單位, 數量도 原材料分類에서 指定한 單位와 그 單位에 依한 數量을 記入하되 事業體에서 使用하고 있는 單位와 相違할 때에는 指定된 單位로 換算하여 주십시오.

~~(原材料의 價格은 帳簿價格(購入價格)에 依하여 評價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品目別로 記入하지 못한 原材料에 對하여는 이를 一括하여 其他欄에 金額만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나 農業, 林業, 水產業 및 鑛業等 原始產業活動을 兼營하고 있는 事業體에 있어서 使用한 ~~自家生產原材料의~~ 評價는 ~~使用當時의 時價(運賃包含)로~~ 하여 주십시오.

ii) 燃 料 費 (11)

1963年中에 鑛產物 또는 製品 生產過程에서 使用한 燃料를 帳簿價格(購入價格)으로 評價하고 미리 調查票에서 指定한 單位에 依하여 數量과 金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熔接用 酸素와 自家發電에 消費한 燃料等도 燃料費에 包含하여야 합니다.

iii) 購入電力費 (12)

1963年間에 使用한 購入電力의 料金과 使用量을 記入하여야 하나 同年間에 支出한 것에 對한 料金과 使用量을 記入하여도 無妨합니다. 그리고 事務室用電燈料金과 1963年間에 支出하여야 할 電力料金으로서 滯拂된것도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그리나 自家發電에 所要된 費用은 여기서 이를 除外하고 燃料費에 加算하여 주십시오.

iv) 購入用水費 (13)

1963年間에 使用한 購入用水의 料金과 使用量을 記入하여야
하나 同年間에 支出한 것에 對한 料金과 使用量을 記入하여도
無妨합니다. 그리고 事務室用이나 從業員의 飲料用水費와
1963年間에 支出하여야 할 水道料金으로서 遭拂된 것도
여기에 包含시켜 주십시오.

v) 委託生產費 (14)

自家生産原材料나 購入原材料를 他事業體에 供給하여 委
託生產을 시킨 경우에 있어서 受託生產事業體의 1963年間
既成高部分에 對하여 支出하여야 할 加工賃을 말하며 여기
에는 實地支出된 加工賃(未拂包含)과 運賃을 包含하여 주
십시오.

그러나 委託製造를 為하여 供給한 原材料의 使用額은 여
기에 包含시키지 않고 原材料費에 包含시켜 주십시오.

vi) 修理 및 維持費 (15)

生產活動을 為하여 保有하고 있는 有形固定資產의 正常
의 性能을 維持하기 為하여 支出된 諸費用을 調査記入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修理 및 維持에 使用한 原材料,
機械의 潤滑油類, 消耗品, 附屬品等의 購入價格이 包含되어
야 합니다.

이項目을 調査할때 特히 留意하여야 할點은 修理 및
維持費中 會計上 損失로 處理되어야 할 性質의 것을 여
기에 計上하는 것이며 建物 및 構築物의 增改築이나 機械
器具等의 改造로 그 資產의 性能이 높아지고 價值가 增
殖됨으로서 會計上 有形固定資產의 價值增加로 處理되어야
할 性質의 것은 여기에 包含시키지 말고 有形固定資產의
取得으로 보아 주십시오.

(5) 製品出荷額 및 収入額(VI)

1963年間의 製品出荷額, 廉品等出荷額, 受託製造收入額 및
受託修理料收入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i) 製品出荷額 (17)

製品出荷라 함은 自家生產原材料 또는 購入原材料를 使用
하여 그 事業體에서 直接하였거나 委託시켜서 하였거나 그
事業體의 採算下에 生產한 모든 製品의 販賣를 말합니다.
販賣라 함은 그 事業體에서 直接販賣하였거나 委託시켜
販賣하였거나를 不問하고 또 現金, 手票를 받고 販賣하였
거나 外上(어음)으로 販賣하였거나를 不問하고 이를 모두
販賣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見本 또는 膳物用으로 無償出荷된 것과 自體의
事務用이나 從業員給與用으로 自家消費된 製品은 이를 販

賣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反面에 購入한 物品에 加工을
하지 않고 原狀대로 販賣한 것이나 또는 他事業體의 原
料를 使用하여 受託生產한 製品의 出荷는 여기서 이를 販
賣나 出荷로 보지 않습니다.

○ 出荷製品의 評價에 있어서는 原則적으로 工場(礦山은 最
寄驛) 引渡販賣價格으로 하며 그 製品이 物品稅 또는 酒
稅의 賦課對象品目일 때에는 同稅金은 包含한 販賣價格으
로 하며 無償으로 出荷된 것이나 自家消費한 製品의 評
價亦是 위에서의 方法과 同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外國에 輸出된 製品으로서 外貨로 販賣契約이 된 것은 그
外貨를 契約當時의 外換時勢(公定換率±三週 미암)에 依하여
원貨로 換算하여 주십시오.

調査票의 製品出荷額欄에는 그 事業體에서 1963年間에 販
賣한 製品名을 別冊 生產品分類에 記載된 그 事業體 產業細分
類에 該當되는 品目中에서 販賣金額이 1년 부터 8種까지
를 選定하여 品目, 單位, 數量, 金額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單位와 數量도 生產品分類에서 指定한 單位와 指定한 單位
에 依한 數量을 記入하되 그 事業體에서 使用하고 있는 單
位가 指定된 單位와 相違할 때에는 指定한 單位로 換算
한 單位와 數量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品目別로 記入치 못 하는 品目에 對

하여는 이를 一括하여 其他欄에 金額만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廢品等出荷額 (18)

製品의 生產過程에서 생기는 廢品 即 例를 들면 紡織工場의 削糸, 工場이나 印刷所에서 나오는 紙屑, 破紙와 같은 것 또는 不合格品(不良品)等을 1963年中에 販賣하여收入된 金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廢品은 製品의 生產過程以外에서 나오는 廢物 即 破損된 機械附屬品, 使用不能인 冊床, 椅子, 事務用品等과는 嚴然히 区分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이러한 廢品을 除外하여 주십시오.

iii) 受託製造收入額 및 受託修理料收入額(19, 20)

•他事業體로부터 原材料의 供給을 받아 受託製造한 것에對한 加工費收入 또는 他人所有物品을 修理加工한 것에對한 修理料收入을 말하며 1963年中의 既成高部分에 對하여 받아야 할 收入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시되 未收金도 合算하여 주십시오. 修理나 製造의 受託을 받았을 때에 一部原材料를 그 事業體(受託)에서 購入充當하였을 경우에는 同原材料費를 生產費에 計上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事業體에서 中古品을 購入하여 修理해서 販

賣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受託修理로 보지 않고 中古品購入價格은 生產費에, 販賣品價格은 製品出荷에 각각 計上하여야 합니다.

(6) 內國消費稅額 (V-22)

出荷된 製品中 物品稅 또는 酒稅의 賦課對象品目이 있을 境遇에는 그 事業體에서 1963年間에 徵收하여 納付 (稅務署)한 內國消費稅額(物品稅 및 酒稅)을 調查記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1963年間에 賦課되었으나 年末까지 納付하지 못한 內國消費稅額도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外國輸入品에 對한 消費稅는 外國生產品이 賦課對象이 되므로 國內生產品이 賦課對象인 內國消費稅와는 區分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輸入品에 對한 消費稅를 包含시키지 마십시오.

(7) 在庫額 (VI)

i) 年初年末 製品在庫額 (23)

年初年末이라 함은 1963年的 年初(1月1日營業開始前) 年末(12月31日마감時)을 말합니다. 따라서 年初在庫額은 事實上 前年末日現在의 在庫額과 符合될 것입니다. 年初年末在庫額은 完製品 및 半製品과 在工品을 區分 調査하여 주십시오.

在庫品의 評價는 그 事業體의 帳簿價格(原價)으로 하여
주십시오.

他事業體로부터 受託받아 生產한 製品의 在庫는 여기에
包含하지 않으며 이 在庫는 委託事業體에서 計上하여야 할
性質의 것입니다.

그리고 販賣代金까지 받았으나 아직 出庫가 안된 製品
이 있을 경우는 이를 在庫에서 除外하고 出庫한 製品으
로 보아야 합니다.

ii) 年初年末 原材料 및 燃料在庫額(24)

製品在庫額과 같은 方法으로 年初年末의 原材料 및 燃
料에 對한 在庫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8) 有形固定資產(VII)

여기에서 有形固定資產이라 함은 1年以上의 經濟的 價
值를 維持하는 土地, 建物, 構築物, 機械, 器具, 裝置, 車輛,
運搬機具 및 船舶等을 말하며 無形固定資產인 營業權, 特
許權, 地上權, 鑛業權은 調査對象이 안됩니다.

i) 年間有形固定資產의 取得額 및 增改築額(26)

1963年間에 土地, 建物, 構築物, 機械, 器具, 裝置, 車輛,
運搬機具 및 船舶等 有形固定資產을 取得 또는 增改築을

위하여 支出된 모든 費用을 調査 記入하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有形固定資產의 機能을 維持保全하기 위하여
部分品을 代替시켰거나 修理에 支出된 諸費用은 여기서 除外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評價方法에 있어서 他事業體로 부터 購入한 것
은 取得을 為하여 支出된 費用과 設置費를 包含하고 自
家에서 生產하여 取得한 固定資產에 對하여서는 그것이 完
成되었건 完成되지 않았건을 不問하고 그 固定資產의 既成
高를 올리는 데 1963年間에 支出한 모든 費用 即 賃金,
俸給, 資材代 및 其他支出費用을 全部算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資產再評價에 依하여 帳簿價格이 名目上으로만 增
加된 것은 이를 除外하여 주십시오.

ii) 土 地 (26-(1))

工場 및 事務所의 敷地, 社宅敷地, 建築豫定敷地, 運動場
等의 取得을 為한 諸費用과 建築 및 築造物의 工事を 為
한 土地改良에 支出된 整地費等을 包含하여 주십시오.

iii) 建物 및 構築物 (26-(2) 26-(3))

建物이라 함은 工場, 事務所, 社宅, 寄宿舍, 其他附屬建物
을 말하며 여기에는 昇降機, 冷暖房裝置, 通風裝置等인 內
部裝置를 包含하며 構築物이라 함은 道路, 鐵道, 橋梁, 담

장, 煙突, 水槽탱크, 橋, 造船臺, 送油管, 上水道, 井, 造園等을 말하며 이와같은 固定資產의 取得을 為한 1963年間의 諸支出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iv) 機械 및 器具 (26—(4))

이 項目에서는 耐久性있는 產業用機械(力織機, 原動機, 旋盤等)와 容器 및 工具(琺瑯당크, 함마等) 그리고 反射爐, 加熱爐, 熔鑄爐 및 傳導裝置等의 取得을 為한 1963年間의 諸支出額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遊休中이거나 豫備品으로 保管中인 것이라도 1963年間에 取得한 것이라면 이를 包含시켜 주십시오.

그리나 事務用備品 및 器具는 이를 여기서 除外하고 事務用機械 例컨대 計算機, 會計機, 穿孔機, 檢孔機, 分類機等은 여기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v) 車輛, 船舶 및 運搬機器(26—(5))

車輛, 自動車 및 牛馬車等의 陸上用運搬機器와 傳馬船, 運搬船, 貨物船等의 海上用運搬機器의 取得을 為한 1963年間의 諸支出額을 말합니다.

vi) 年間有形固定資產의 處分額 및 損害額(26)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有形固定資產을 1963年間에

賣却, 讓渡, 寄附 또는 火災, 風水害, 盜難等으로 因하여 有形固定資產의 實質的인 價值減少가 있을 때에는 同資產을 實地 賣買한 價格으로 評價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實地 賣買價格이 없을 경우에는 減少原因의 發生當時에 賣買할 수 있는 價格으로 評價하여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減價償却에 依하여 帳簿價格이 減少된 金額은 이를 包含시켜서는 안됩니다.

(9) 動力施設(Ⅲ)

i) 年末現在 動力施設의 能力 (29)

1963年12月31日現在 事業體에 設置된 모든 電動機, 原動機 및 自家發電施設에 原製作者が 붙인 ベ텔(規格表)에 記載된 總馬力數와 發電能力을 말하며 動力生產을 目的으로 使用되는 移動性 原動機도 이에 包含됩니다. 이 項目에 있어서는 電動機와 原動機(船舶, 車輛用 및 自家發電用除外)의 馬力數와 自家發電能力을 區分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豫備로 保有中이거나 遊休中인 電動機와 原動機 및 自家發電施設도 이에 包含하여 주십시오.

ii) 電動機 (29-(1))

一般的으로 電動機에는 自家發電한 電力으로 움직이는 것과 購入電力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區分할 수 있으나 여

기서는 이와 같은 差別이 없는 電動機의 總馬力數를 調査합니다. (個個 機械에 直接 附着된 電動機는 除外)

iii) 原動機(船舶用, 車輛用 및 自家發電用除外)(29-(2))

原動機의 用語는 때로는 電動機까지 包含한 것으로 使用되기는 하나 여기서는 電動機를 原動機의 範疇에서 除外합니다.

原動機에는 機械를 直接 움직이게 하는 것과 自家發電에 利用 되는 것과 利用目的에 따라 原動機를 區分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963年末現在의 利用狀態에 따라서 機械用과 發電用으로 區分을 하고 여기서는 機械運轉用原動機만의 馬力數를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iv) 自家發電能力 (29-(4))

1963年末現在의 利用狀態에 따라 自家發電用 原動機및 施設의 發電能力을 調査記入하여 주십시오.

(10) 管轄事業體 (IX-30)

管轄事業體라 함은 經營主體인 한 企業體에 所屬된 모든 事業體를 말합니다.

그 事業體가 本社 또는 本店인 경우에 限하여 그 企業體에 屬하며 이센서스의 調査對象이 된다고 認定되는 事

業體를 調查記入하여 주십시오. 事業體名, 代表者名, 所在地
主要生產品名은 事業體의 特徵에서 說明한 바 있는 要領에
依하여 記入하시고 從業員數와 操業, 休業은 1963年12月末
日現在로 하여 주시고 操業, 休業欄은 該當欄에 「○」標를
表示하여 주십시오.

(11) 其他

- i) 應答者欄에는 事業體側應答者の 記名만을, 調查員 및
指導員欄에는 記名과 擦印을 하여 주십시오.
- ii) 調査票作成根據의 區分에 있어서는 각 該當事項()
內에 「○」表示를 하여 주십시오.

(12) 補遺

i) (5)의 i)製品出荷額

한事業體의 出荷製品名選定에 있어서 別冊生產品分類에
記載된 該當產業細分類의 製品名으로서는 그事業體의 主
要製品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또한 製品名
이 8까지에 未達되는 境遇에는 同產業細分類가 屬하는
中分類內에서 主要製品名을 더 찾아서 調査票에 記入하
여주십시오.

이와같은 方法에 依하더라도 그 事業體의 主要製品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製品名이 8가지에 未達되

는 경우에는 慣習名稱에 依하여 그나마지 製品名을 該當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ii) (4)의 i)原材料費

한 事業體의 原材料品名 選定에 있어서 別冊 原材料分類에 記載된 該當 產業細分類의 原材料品名으로서는 그 事業體의 主要原材料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原材料品名이 8가지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同 產業細分類가 屬하는 中分類內에서 主要原材料品名을 더 찾아서 調査票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이와같은 方法에 依하더라도 그 事業體의 主要原材料의 大部分을 「카바」할 수 없거나 原材料品名이 8가지에 未達되는 경우에는 慣習名稱에 依하여 그 나마지 原材料品名을 該當欄에 記入하여 주십시오.

iii) 本社實査上의 處理

한 企業體의 本社가 管轄事業體와 分離해서 別個事業體로 分類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本社에서 管轄事業體의 計數를 合친 한장의 調査票를 作成하되 그 調査票의 管轄事業體欄에는 空欄으로 남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本社가 管轄事業體와 分離해서 하나의 事業體로 分類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本社에서 本社를 包含한 各事業體別로 調査票를 각각 作成하되 本社

調査票의 管轄事業體欄에는 各事業體의 內譯을 記入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우 萬一 本社에서 管轄事業體의 計數調査가 不可能할 때에는 可能한데 까지 記入하여 주십시오.

註：本社에서 이와같이 調査함으로서 重複調查할 憂慮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セン서ス本部에서 別途審査가 있을것임。